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

檢 討 報 告 書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基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

檢 討 報 告 書

1. 회부경위

○ 청 원 자 : 영등포구 도신로 64가길 1, 김형기 외 489명

○ 소개의원 : 김용범 의원(행정위원회)

○ 접수일자 : 2014. 3. 4(2번)

○ 회부일자 : 2014. 3. 13

2. 청원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통장의 임기)에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임기를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을 요구한 청원임.

3.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일부 통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통장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 연임 규정을 2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원법

5. 검토의견

○ 동 청원은 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김형기외 489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개정을 요청한 내용임.

<표1> 청원 내용

현 행	청원 내용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우리구 통장 임기 관련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1988. 5.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간 총 3회의 조문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의회 개원 이후에는 의원발의 또는 상임위원회 수정발의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표2> 임기관련 조문 개정 내용

1988. 5. 1 제정	1990. 3.24 개정	2001. 1. 9 개정	2005. 5.25 개정
기준 없음	2년, 연임 (조문 신설)	2년, 1회 한정 연임 (상임위 수정 발의)	3년, 1회 한정 연임 (의원 발의)

○ 서울시 자치구의 통장 임기 관련 내용을 보면, 연임 제한에서는 22개 자치구가 연임횟수를 제한(1회 3개, 2회 14개, 3회 5개)

하고 있고, 2개[1] 자치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기에서는 중구(3년)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자치구의 통장 재직기간은 최대 4~8년까지 가능하며, 평균으로 환산하면 6.27년임.

【붙임 서울시 자치구별 통장 임기 현황 참조】

○ 동 청원은 1988년 조례 제정 이후 동 기능전환 등을 거치면서 일선행정의 보조자 기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기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재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연장에 따라 통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원 주체가 이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통장 선임을 희망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장 임기와 관련한 그간의 조례개정 취지, 타 자치구 현황,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1) 강북, 양천구

【별 첨】

서울시 자치구별 통장 임기 현황(2014. 2. 5기준)

연번	자치구	정년(연령)	통장임기		비 고 (재임가능기간)
			년수	연임규정	
1	영등포구	30세 이상 65세 이하	3년	1회 연임	6년
2	종로구		2년	2회 연임	6년
3	중 구		3년	1회 연임	6년
4	용산구	30세 이상 65세 이하	2년	3회 연임	8년
5	성동구	30세 이상	2년	2회 연임	6년
6	광진구	63세 이하	2년	2회 연임	6년
7	동대문구	30세 이상	2년	3회 연임	8년
8	중랑구		2년	2회 연임	6년
9	성북구	25세 이상	2년	2회 연임	6년
10	강북구	30세 이상 65세 이하	2년	연임	
11	도봉구		2년	2회 연임	6년
12	노원구		2년	1회 연임	4년
13	은평구	30세 이상 65세 이하	2년	3회 연임	8년
14	서대문구	만 30세 이상	2년	3회 연임	8년
15	마포구	30세 이상	2년	2회 연임	6년
16	양천구	30세 이상 60세 이하	2년	연임	
17	강서구	65세 이하	2년	2회 연임	6년
18	구로구		2년	2회 연임	6년
19	금천구		2년	2회 연임	6년
20	동작구	30세 이상	2년	2회 연임	6년
21	관악구	25세 이상	2년	3회 연임	8년
22	서초구	30세 이상	2년	1회 연임	4년
23	강남구		2년	2회 연임	6년
24	송파구	19세 이상	2년	2회 연임	6년
25	강동구	30세 이상	2년	2회 연임	6년